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5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운,
이상욱,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임.
- 향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 증가, 복지비용 증가 등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도시성장 잠재율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음.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부담, 양육비 부담, 일 가정양립 부담 등으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저출산 대응에 있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나.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다. 신설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라.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난자동결 시술 비용</u></p> <p><u>2. 정·난관 복원 시술비</u></p> <p><u>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